

한국알콜산업 Kai

(☎ : (031) 881 - 8025)

한전락기획 : 2019 - 03
수 신 : 주주 제위

2019년 3월 11일

제3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올 한해에도 더욱 번창하시기를 앙망합니다.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거 제35기 (2018. 1. 1 ~ 2018. 12. 31)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최일시 : 2019년 3월 26일 (화) 오전 08:30
2. 개최장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탑실로35번길 14(공세동) 당사 대회의실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3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성명	생년월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 와의관계	비고
김정수	1955.03	현) (주)케이씨엔에이 대표이사	이사회	-	대표이사	사내이사
주성호	1960.06	현) 한국알콜산업(주) 대표이사	이사회	-	-	사내이사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배당내역 : 1주당 예정배당금 50원
5.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과 명의
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
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
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11일

한국알콜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지 용 석 (직인생략)

<개정 정관 조문 비교표(案)>

현 행	변경 안	비 고
제8조 (주권의 종류) 회사의 주식은 보통주식으로서 전부 기명식으로 하고 주권은 일주권, 오주권, 십주권, 오십주권, 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8조 <삭제>	전자등록 의무화에 따른 주권의 종류 삭제
(신설)	제8조의 2(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전자등록 의무화됨에 따라 근거신설
제12조 (명의개서대리인)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부분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예치하고 <u>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u>	제12조 (명의개서대리인)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부분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예치하고 <u>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u>	전자등록 의무화에 따른 주식사무처리 변경내용 반영
제13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13조 <삭제>	전자등록 의무화에 따른 주식사무처리 변경내용 반영
제18조 (사채 발행에 관한 준용 규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8조 (사채 발행에 관한 준용 규정)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전자등록 의무화에 따른 주식사무처리 변경내용 반영
제19조 (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9조 (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문구정비
(신설)	부 칙 (2019년 3월 26일) 1. 이 정관은 201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8조의2, 제12조, 제13조 및 제18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기준 부칙 단서